

인천광역시서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

<http://www.seo.incheon.kr/>

선

기관 의 장

람

제1977호 2026.2.13.(금)

차 례

공 고

○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422호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
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——— 1

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6-422호

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「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」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, 「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.

2026. 2. 13.
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1. 개정이유

- 행정안전부 기금운용 성과보고서 결과 및 인천 서구 2025년 총괄 기금 정비계획에 따라 문화원진흥기금을 폐지
- 보조금 지원 및 관리·감독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지방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(안 제1조 및 안 제2조)
- 보조금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지방문화원 관리·감독에 관한 사항(안 제6조 및 안 제7조)

3. 의견제출

-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나 개인은 2026년 3월 6일 (금)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(참조: 문화관광체육과, 전화 560-5935, 팩스 560-2748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- 제출자의 성명(법입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

4. 참고사항

-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1. 제안이유

행정안전부 기금운용 성과보고서 결과 및 인천 서구 2025년 총괄 기금정비계획에 따라 운영 실적이 저조한 문화원진흥기금을 폐지하고, 보조금 지원 및 관리·감독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지방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(안 제1조 및 안 제2조)
- 나. 보조금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다. 지방문화원 관리·감독에 관한 사항(안 제6조 및 안 제7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별첨
- 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: 예산법무과[예산팀 협조,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경유],
감사실, 가정보육과와 합의

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

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서구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문화원진흥법」에 따라 지방문화발전을 위하여 설립된 지방문화원에 대한 지원·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지원·육성 대상 문화원) 지원 및 육성대상 문화원은 「지방문화원진흥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인가를 받고, 인천광역시 서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(이하 “문화원”이라 한다)으로 한다.

제3조(보조금의 지원 등)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문화원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,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.

1. 지역문화의 계발·보존 및 활용
2. 지역문화(향토자료를 포함한다)의 발굴·수집·조사·연구 및 활용
3.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

4.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
 5.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
 6. 「문화예술교육 지원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
 7.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
 8.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
- ② 문화원의 운영비는 문화원 자체 수입금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4조(연구·조사·문화행사 위탁) 구청장은 지역문화의 개발과 진흥, 발전 등에 관련된 연구·조사와 문화행사 개최 등을 문화원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5조(협조 등) 구청장은 문화원으로부터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.

제6조(사업계획서 제출) ① 문화원은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.
② 문화원이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제7조(문화원 사무의 검사·감독) ① 구청장은 보조금이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보조금의 집행 상황 등을 지도·감독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지도·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원에 관련 장부의 열람이나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, 관계 공무원에게 현장을 방문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문화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③ 구청장은 지도·감독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, 이미 지급된 보조금을 회수 할 수 있다.

④ 제1항에 따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증표는 공무원증으로 대신할 수 있다.

제8조(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)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지방문화원진흥법」 등 관계 법령 및 「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따른다.

제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 법령 발취

지방문화원진흥법

제3조(국가 등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·육성하여야 한다.

제4조(지방문화원의 설립) ① 지방문화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·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

③ 지방문화원은 특별자치시·시·군 또는 자치구의 행정구역을 그 사업구역으로 한다.

④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방문화원의 설립인가를 하려면 미리 그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)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제5조(지방문화원의 설립인가 기준) ① 시·도지사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지방문화원 설립인가의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인가할 수 있다.

1. 회비 등으로 조성하는 재원의 수입으로 제8조의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2. 제6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갖추었거나 갖추 능력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제6조(시설) ① 지방문화원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·도 조례로 정하는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.